

2023학년도

# 신입생모집요강

[재외국민과 외국인]

[북한이탈주민]



예원예술대학교

# 목 차

I.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1
1. 재외국민 및 외국인	
2. 순수 외국인	
II. 지원대상 및 지원자격	2
III. 제출서류	5
IV. 지원방법	6
1. 전형일정	
2. 전형료	
3. 지원 시 유의사항	
4.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V. 전형방법	7
1. 서류심사 및 면접전형일정	
2. 전형방법 및 배점	
3. 선발기준	
VI. 합격자 발표 및 등록	8

## 재외국민 및 외국인 특별전형

### I. 전형일정

모집구분	원 서 접 수	면접 및 필기시험	합격자발표	등 록	비 고
재외국민및외국인 (정원2%이내) 수시모집	2022.09.13. ~ 09.17	2022.10.22. ~ 10.30	2022.11.10	2022.12.16.~19	인터넷 원서접수가능
부모모두외 국인인 외국인/전 교육과정이 수자	2023.3월입학 ~ 2023.02.07까지	추후공지	추후공지	추후공지	우편접수만 가능
북한이탈주 민	수시	2022.09.13. ~ 09.17	2022.10.22. ~ 10.30	2022.11.10	인터넷 원서접수가능
	정시	2022.12.29. ~ 2023.01.02	2023.01.13	2023.01.19	

※ 재외국민 및 외국인(정원2%이내) 수시모집 미충원시 신입생 정시모집 기간에 추가모집 실시

### II.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재외국민 및 외국인)

모 집 단 위 (학 과)	캠 퍼 스	모 집 구 분		
		재 외 국 민 및 외 국 인	부 모 모 두 외 국 인 인 외 국 인 / 전 교 육 과 정 이 수 자	북한이탈 주 민
미 술 조 형 디 자 인 학 부	희 망 캠 퍼 스	1	모 집 인 원 제 한 없 음	모 집 인 원 제 한 없 음
디 지 털 콘 텐 츠 학 부				
공 연 예 술 학 부				
스 포 츠 과 학 과				
미 술 조 형 디 자 인 학 부	드림 캠 퍼 스	1	모 집 인 원 제 한 없 음	모 집 인 원 제 한 없 음
디 지 털 콘 텐 츠 학 부				
공 연 예 술 학 부				
합	계	2		

※ 재외국민 및 외국인(정원외2%)모집은 학과당 입학정원의 10%이내에서만 선발. 10%가 초과 하였을시에는 전형총점 순으로 타학과 차순위자에게 합격자 발표.

### III. 지원대상 및 지원자격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중 아래의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지원 가능

## 1. 재외국민(정원외2%)

### 가. 기본 학력요건

초·중등 12년 이상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고등학교 졸업한(예정) 자 또는 이와 동등 학력을 소지한 자 중 아래 항에 해당하는 자

- 1) 외국소재 고교 졸업자
- 2) 외국소재 고교에서 국내고교로 전학하여 국내고교를 졸업한 자

### 나. 자격요건

구 분	지원 자격	최저 해외 재학거주체류기간							비고	
		학 생			보호자		배우자			
		재학	거주	체류	근무	거주	체류	거주		체류
영주교포	부모 및 학생 모두가 외국에서 2년 이상 영주하는 교포(영주권 발급 받은 자)의 자녀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고등학교과정 또는 고등학교과정을 포함한 중·고교과정을 연속으로 2년(4학기)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	2년	2년	2년	-	2년	2년	2년	2년	
해외근무자 (공무원, 상사직원, 외국정부·국제기구의 자녀)	외국에서 2년 이상 근무중이거나 근무하고 귀국하는 해외 근무자의 자녀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고등학교과정 또는 고등학교과정을 포함한 중·고교과정을 연속으로 2년(4학기)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	2년	2년	2년	2년	2년	2년	2년	2년	
유치과학자 및 교수요원 자녀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고등학교과정 또는 고등학교과정을 포함한 중·고교과정을 연속으로 2년(4학기)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	2년	2년	2년	2년	2년	2년	2년	2년	
기타 재외국민	기타 적법한 사유(절차)로 외국에 거주(근무)하는 자의 자녀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고등학교과정 또는 고등학교과정을 포함한 중·고교과정을 연속으로 2년(4학기)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 *부모의 해외거주 사유(예): 자영업, 현지회사 근무, 해외 선교활동, 해외 파견 교직원 등	2년	2년	2년	2년	2년	2년	2년	2년	

#### 1) 재학기간

- 가) 수업결손 없이 2개 학기를 이수한 경우 1년을 재학기간으로 인정
- 나) 국내소재 외국인학교 제외
- 다) 해당국의 학제 등을 고려하여 연도가 아닌 학기 기준으로도 해석  
(예: 중교과정 연속 3년 이상--> 해당 국가가 2학기제인 경우 중교과정 연속 6학기 이상, 3학기제 또는 쿼터제인 경우 중교과정 연속 9학기 또는 12학기 이상 등)
- 라) 출입국이 빈번하여 2년 이상 계속 재학하지 아니한 경우는 고등학교 과정 1년 이상을 포함하여 통산 3년 이상의 중등학교 과정에 재학한 경우는 2년 이상 계속하여 재학 한 것으로 본다.

#### 2) 부모의 근무기간, 거주(영주)기간, 체류기간

가) 학생의 재학기간과 중첩된 기간만을 인정함.

- (1) 해외거주기간: 재학 및 근무를 위해 해당국에 거주한 기간으로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상에 기재된 기간
- (2) 해외체류기간: 출입국증명서상 해당국의 거주기간에서 국내체류일수를 제외 한 기간
- (3) 해외영주기간: 영주권을 발급받은 후 해외 해당국에 거주한 기간
- (4) 해외근무기간: 증명서상(재학 및 경력증명서) 해외근무 발령일부터 귀임발령일까지의 기간
- (5) 해외파견 근무자의 배우자(부 또는 모)에 대한 동반 체류 및 거주 의무 여부

### 3) 해외파견근무자의 범위

가) 공무원 : 국가공무원법 제2조,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나) 해외근무상사 직원의 범위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의 임직원
- 외국환거래법시행령에 의하여 설립된 해외지점(또는 해외사무소)의 임직원
- 내국법인으로서 외국환은행이 인증한 해외지점(또는 해외사무소)의 임직원(설치인증·허가되지 않았거나 또는 설치인증허가기간이 지난 해외지점 등에서 근무한 기간은 외국근무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 외국환은행(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현지법인·금융기관 포함)의 임직원
- 정부파견의사, 언론기관특파원

다)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의 범위

- 외국정부: 해당국가의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국가를 대표하는 정부기관 (단, 기타 국가기관, 지방정부, 국영기업체는 제외)
- 국제기구: 정부간의 국제조약·협약 등에 의하여 설치된 국제기구(단, 기타 비정부간 또는 국제단체간의 협약 등에 의하여 구성된 국제기구는 제외)

## 2. 외국인(정원외2%)

### 가. 자격요건

- 1) 초·중등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고등학교 졸업한(예정) 자 또는 이와 동등 학력을 소지한 자 중 외국국적을 취득한 후 외국의 고교과정을 2년이상 수료한 외국인.(복수국적자 제외)

## 3. 정원제한이 없는 재외국민 및 외국인

구 분	지원 자격	비고
부모모두가 외국인인 외국인 (순수외국인)	- 부모모두가 외국인인 외국인학생으로서 외국소재, 국내소재외국인 학교를 불문하고 초·중등 12년 이상의 전교육과정을 이수한자. (12년 미만의 학제를 채택한 국가에서 전교육과정 이수자 인정) - 보호자의 국적, 거주 및 체류기간과 상관없이 지원가능	한국어능력 시험 3급 인증서 (해당자)또는 한국어교육기관 3급 과정 수료자
전교육과정이수자	-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 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외국인, 귀화허가를 받은 결혼이주민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법률]에 의해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된 자로서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자	

※ 한국어능력시험 성적이 없는경우

- 한국어교육기관 3급 과정 수료자
- 면접고사시 수업가능여부를 판단하여 면접위원 추천서로 대체

## IV. 제출서류

1. 서류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공통제출서류와 지원자격별제출서류를 반드시 확인한 후 아래 서류순서에 따라 정리하여 제출할 것.

구분	구 비 서 류	비고
영주교포	1) 본교 소정양식의 입학지원서(본교로부터 통보받은 후 제출) 2)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3) 초.중.고등학교 성적증명서 4) 주민등록말소등본(호(제)적 등본) 5) 출입국사실 증명서(부,모,학생) 6) 영주권 사본(부,모,학생) 7) 재외국민 등록필증(보호자, 학생)	
· 해외 파견 근무 재외국민 · 기타 재외국민	1) 본교 소정양식의 입학지원서 (본교로부터 통보받은 후 제출) 2) 고등학교 졸업(예정) 증명서 3) 초.중.고등학교 전과정 성적증명서 4) 보호자의 재직증명서(외국 근무경력기간 명시) 5) 주민등록말소등본(호(제)적 등본) 6) 출입국사실증명서(보호자.학생) 7) 재외국민 등록부 등본(보호자.학생) 8) 제3국 수학인정서(해당자)	
외국국적 취득 외국인 학생	1) 본교 소정양식의 입학지원서 (본교로부터 통보받은 후 제출) 2) 고등학교 졸업(예정) 증명서 3) 초.중.고등학교 성적증명서 4) 출입국사실증명서(학생: 한국국적과 취득한 외국국적의 출입국사실증명서) 5) 국적상실 확인 증명서(주민등록등본 말소 등본 또는 호(제)적 등본) 6) 외국국적증명서(학생: 시민권사본 또는 여권사본 등) 7) 우리나라에서의 외국인등록증(학생)	
부모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전교육과정 이수자 외국인)	1) 본교 소정양식의 입학지원서 (본교로부터 통보받은 후 제출) 2) 고등학교 졸업(예정) 증명서(재학사실증명서) 3) 초.중.고등학교 성적증명서 4) 출입국사실증명서(부,모,학생):전교육과정 이수자는 학생 본인만 5) 전가족 호적등본 6) 외국국적 증명서(부, 모, 학생: 시민권사본 또는 여권사본 등) 7) 우리나라에서의 외국인등록증(학생, 부모는 해당자에 한함) 8) 재정정보증서류 9) 한국어능력평가 인증서	
전교육과정 이수자 (재외국민)	1) 본교 소정양식의 입학지원서 (본교로부터 통보받은 후 제출) 2) 고등학교 졸업(예정) 증명서 3) 초.중.고등학교 성적증명서 4) 출입국사실증명서(학생)	
북한이탈주민	1) 본교 소정양식의 입학지원서(본교로부터 통보받은 후 제출) 2)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또는 통일부 교육보호대상자 증명서(시군구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보호담당관 발급) 3) 학력증명서(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북한이탈주민)	

## 2.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가. 초·중·고등학교 과정 중 외국에서 이수한 기간에 해당하는 학교의 졸업(예정)증명서, 재학사실 증명서, 성적증명서 등은 A4사이즈(210×296mm)의 크기에 한글로 번역(영어제외)하여 이를 반드시 공증기관에서 공증을 받아 제출서류 원본과 함께 제출함.
- 나. 지정된 제출서류 접수마감일까지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구비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사본을 제출할 경우 서류접수 시 원본을 지참하여 제출해야 함.
- 다. 최종합격 최종등록 후 지원자 구비서류는 반드시 원본으로 제출해야 함.
- 라. 해외고교 졸업예정자의 경우 최종 등록 후 졸업증명서와 최종성적이 기재된 성적증명서를 입학개시 이전까지 제출해야 함.
- 마. 국내학교 성적증명서는 학교생활기록부를 제출해야 함.
- 바. 제출 서류상의 이름이 다른 경우에는 해당국 법원이나 공관장 발행의 동일인 증명서를 첨부해야 함.
- 사. 본교에서 추가서류 제출 요구 시 반드시 응해야 하며, 미제출시는 입학사정대상에서 제외됨.

## V. 전형료 및 지원방법

### 1. 전형료

모집구분	모집단위	원서접수비	면접고사응시료	합 계	비 고
전 전형	전모집단위	30,000	7,000	37,000	

### 2. 지원 시 유의사항

- 가. 모든 기재사항은 기재요령에 따라 정확히 작성하여야 하며, 기재착오 · 누락 · 오기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음을 유의바람.
- 나. 이미 제출한 원서는 수정·취소·반환을 요구할 수 없음.
- 다. 지원대상자는 별도의 추천 절차(주무부장관·재외공관장·시도교육감)를 거치지 않으므로 지원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본인이 지참하여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되, 대리 제출 시 지원자의 학력, 해외거주, 체류, 재학사실 등을 정확히 숙지하여야 함.
- 라. 지원자의 지망은 제1지망에 한함.
- 마. **2개 이상의 대학에 합격한 자는 1개 대학만 등록하여야 하며, 2개 이상의 대학에 등록한 자는 대입지원위반자로서 입학이 취소됨을 유의바람.**
- 바. 정시모집에 지원한자는 같은 모집시기의 타 대학의 복수지원이 불가 함.
- 사. 상기 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대학에 입학한 자에 대하여는 그 합격을 무효로 하고 입학허가를 취소함.

### 3.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 가. 원서접수 후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 긴급한 경우 연락이 취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 나. 입학원서 등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및 부정행위자는 합격 후라도 무효로 하고 입학허가를 취소함.

## VI. 전형방법

### 1. 서류심사 및 면접

- 가. 지원자격에 관한 심사는 학력조회, 출입국사실조회, 각종 제출서류에 관한 사실조회 등을 지속적이고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일괄적으로 지원자격 심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으며, 심사과정에서 문제가 확인된 학생에 한해 개별적으로 연락함.
- 나. 지원자격 소명에 필요한 추가서류 제출요구 시 반드시 응해야 함.

### 2. 전형방법 및 배점

구 분	모집단위	면 점	비 고
재외국민 및 외국인(정원외 2%)	전 모집단위	100%	
부모모두외국인인 외국인	전 모집단위	100%	
북한이탈주민	전 모집단위	100%	

### 3. 선발기준

- 가. 각전형요소를 합산한 총점순위에 의하여 사정하며, 모집단위별 모집인원 100%를 고득점 순으로 선발함.
- 나. 면접고사

모집구분	모집단위	면 점 내 용	면 점 방 법
지원자 전원	전 모집단위	1. 학부(과) 지원동기 및 장래포부 2. 전공적성 및 소질 3. 인성 및 가치관 4. 창의력과 창의적 사고 5. 의사표현력	1. 모집단위별 2인 이상 면접위원 실시 2. 면접성적은 면접위원들의 성적을 합산한 후 평균을 산출 3. 결시자는 불합격처리함

다. 입학전형 성적이 다른 지원자보다 현저히 부족하여 입학을 허가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모집인원이 미달되어도 선발하지 않을 수 있다.

## VII. 합격자 발표 및 등록

### 1. 합격자 발표

- 가. 합격자 발표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므로 수험생 본인이 직접 합격자 명단을 확인한 후 합격에 따른 제반 지시사항을 따라야 함(개별통지는 하지 않음).
- 나. 합격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합격통지서(등록금 고지서 포함) 등을 내려 받아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만 합격자로 확정함.

### 2. 등록금

- ※ 최종 등록기간 중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등록포기로 간주, 합격을 취소하며 북한이탈주민 전형 합격자는 별도 통보함
- 가. 납부장소 : 본교 지정 은행